

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·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321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22일

서울특별시 중구장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공무원 행동강령」(2018.12.24., 2020.5.27. 시행) 개정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」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○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(안 제22조의2)

- 인·허가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신청접수 지연 또는 거부 등  
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 
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 금지

## ○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(안 제23조의2)

-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

## ○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개정 (안 제24조제2항)
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
-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감사 담당관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, 문의전화: 3396-4415, 메일: cya83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1부.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22조의2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**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인가·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
2.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
3. 구가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
4.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·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
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,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23조의2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)** ①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

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감독기관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 받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피감기관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

2.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·의전의 요구

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,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**제24조제2항 본문** 중 “외부강의등을”을 “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”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외부강의등을”을 “공무원의 외부 강의등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2조의2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</u>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p><u>1. 인가·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</u></p> <p><u>2.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</u></p> <p><u>3. 구가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</u></p> <p><u>4.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·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,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3조의2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)</u></p> <p><u>①</u>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 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감독기관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 받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피감기관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p><u>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</u></p> <p><u>2.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·의전의 요구</u></p> <p><u>②</u>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,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/p> <p><u>③</u>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) ① (생 략)	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무원은 <u>외부강의등을</u>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<u>미리</u>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<u>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</u> ----- ----- <u>그 외부강의등을</u> <u>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.
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④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<u>외부강의등을</u> 제한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</u> -----.
⑥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⑦ 공무원은 <u>제6항에</u>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제 제14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	⑥ --- <u>제5항에</u> ----- ----- -----.
⑥ ~ ⑨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1호의2 서식]

##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
신고자	성명	생년월일
	소속	직위(직급)
요구자	성명	직위(직급)
	소속	
요구받은 사항		

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

년 월 일

신고자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